

()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(공고)

시 공 자	상호(사업장 명칭)			성명(대표자)			
	소재지	(전화번호:)					
	공동주택 현황	공급세대	세대별 규모				
			m ²	m ²	m ²	m ²	m ²
		세대	세대	세대	세대	세대	세대
	사업계획 승인일		. . .				
측 정 자	상호			등록번호			
	소재지	(전화번호:)					

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(단위: $\mu\text{g}/\text{m}^3$ 또는 Bq/m^3)

항목	측정 일시 (시간)	측정 지점 (동·호수)	거실 방향	폼알데 하이드	벤젠	톨루엔	에틸 벤젠	자일렌	스티렌	라돈
권고기준	-	-	-	210 이하	30 이하	1,000 이하	360 이하	700 이하	300 이하	148 이하
1지점	(:) (-)									밀폐
										환기
										()
			입주예정자 입회 여부							
2지점	(:) (-)									밀폐
										환기
										()
			입주예정자 입회 여부							
3지점	(:) (-)									밀폐
										환기
										()
			입주예정자 입회 여부							
...	(:) (-)									밀폐
										환기
										()
			입주예정자 입회 여부							
평균										밀폐
										환기
										()

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(공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자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원본 1부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작성요령

- 거실방향은 8방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.(예: 남동향, 남남향)
-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결과란의 라돈 항목은 해당 항목을 측정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 - ‘밀폐’ 란에는 밀폐 조건에서의 측정값을 작성합니다.
 - ‘환기’ 란에는 환기설비(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에 따른 환기설비를 말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)의 가동조건에서 측정한 값을 작성합니다.
 - 라돈 항목의 괄호 안에는 밀폐 이후 환기설비를 가동할 때부터 라돈의 측정값이 권고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작성합니다. 다만, 밀폐 조건에서 측정한 값이 권고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처리절차

